

토론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하다!

| 일 시 | 2016년 4월 7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순 서 —————■

■ 사 회

- 전 삼 현 (송실대 법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발 제

- 황 성 옥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변호사)
- 김 정 옥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토 론

- 조 형 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EBS 이사)
- 김 소 미 (용화여고 교사/자유교육포럼 운영위원)
- 이 재 수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사무처장)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발 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7

- 황 성 옥 (자변 변호사)

계기수업을 통한 전교조의 편향 교육..... 17

- 김 정 옥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토 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하다..... 41

- 조 형 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EBS 이사)

교육부가 전교조 ‘세월호 수업’ 금지한 까닭 43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의 덕(德)을 가르쳐야 한다-

- 김 소 미 (용화여고 교사/자유교육포럼 운영위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하다..... 47

- 이 재 수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사무처장)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사법부 판결 비판을 중심으로-

황 성 옥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변호사

1. 들어가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 된 지도 17년, 설립된 때로부터 따지면 이제 27년이 넘었다. 설립당시부터 교사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만 하는 직업군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전교조는 정치투쟁의 목적으로 설립하는 단체일 뿐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참교육’이라는 구호가 기존 부조리에 염증이 나있는 일부국민들에게 기대를 심어주었고 전교조와 이념적 교분이 있는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전교조는 합법화되었다. 그 이후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사회 특히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

전교조가 사사건건 계기수업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편향되거나 왜곡된 사실을 교육하고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사에 학생들을 참석시키거나 수업 중에 편향적 정치성을 드러내는 일들은 이제는 그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식상하리만큼 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보다는 연가투쟁이나 시국선언 등으로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도 전교조의 특징이었다.

전교조의 도덕성도 설립당시 일반국민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다. 전교조 교사가 교생인 여대생을 성추행하거나 여고생을 성추행 한 경우,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한 경우, 민주노총의 간부가 전교조 교사를 강간하려 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달리 조용했다. 세월호 참사계기수업에 확인되지 않은 특정세력의 의혹을 교육자료에 담는 행태는 그들이 말하는 도덕성과 애초의 참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교육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교육의 영역에서 교사가 이를 행한다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국고보조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조전혁 전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원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더니 자신들의 돈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그것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 또한 전교조니까 이해된다고 한다면 너무 서글플까?

2. 헌법적으로 교육은 학문과 다르며 사상과도 다르다.

가. 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영역이 다르다. 학문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 자유이긴 하나, 제도권 교육 틀 안에서는 대학생이상부터가 학문의 자유에 포섭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대학생보다는 대학교수가 학문의 자유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대학생은 대학교수가 가지는 학문의 자유 속에서 교육을 받기에 고등학교과정보다는 그 교육내용에 대한 용인의 한도가 넓다.

나. 교육은 사상의 자유와도 영역이 다르다. 사상의 자유란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신념체계를 불법적으로 국가나 외부세력으로부터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¹⁾한다면, 교육은 바로 이러한 사상의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즉 가르치는 영역으로 넘어오는 순간 사상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도 특정한 사상을, 특히 대한민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위배하라는 사상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와 같이 교육은 다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지만 헌법적으로 학문과 교육은 달리 취급된다.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전달이 중점이고 일정 시간 후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판단을 심어주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다.²⁾ 그렇기에 교육은 헌법이념과 보편적 지식을 전달해야하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학문의 자유가 자신이 연구한 자료를 전파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고찰되는 반면에, 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그 학생들의 가장 1차적인 보호자인 부모의 교육권이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자유권조항³⁾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31조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에게 있어서 교육할 자유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로 보장된다. 모든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교사의 교육의 자유도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필연적으로 교사의 교육할 자유는 학생들의 수업권 즉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의 부모들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의 헌법 제37조 제2항과 더불어 헌법 제31조 제4항이 개별적 법률 유보⁴⁾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교

1)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없다. 무한정의 권리를 누리는 독재자가 없기 때문이다.

2) 헌법재판소도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 데 반하여,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면서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

3) 강학상 헌법 제10조부터 제31조까지를 일반적으로 자유권으로 본다. 교육의 자유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아도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장된다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자유권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적 권리로 보고 있다.

4) 강학상 용어로 헌법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사유와 방법을 직접 규정하면 헌법유보라고 하며 그 사유나 방법을 법률에 위임하면 그것을 법률유보라고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특정 기본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위 세 가지 사유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법률유보라고 하는데 비

사의 교육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가.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제6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소결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보자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교육과정이나 특정 정치적, 정파적 세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받아야한다는 의미(소극적 의미)와 더불어 교육자제도 특정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적극적 의미)을 의미한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교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위 두 가지 원칙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가치이며 교육을 통해 반드시

해, 개별적인 기본권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개별적 법률유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에 관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공공필요라는 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재산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요건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지켜야 할 원칙이므로 오히려 교육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형해화시켜왔던 세력들의 단골논리에 불과하다.

4.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가. 교육기본법상 정의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제4항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각종 법률상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국공립교원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공무원은 헌법에⁵⁾ 따라, 국가공무원법⁶⁾ 및 지방공무원법⁷⁾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은 물론 형사처벌⁸⁾까지 받도록 되어있다. 사립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에 관한 규정은 국공

5)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요구하고 있다.

6)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후략)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 각주 5)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8) 제84조(정치 운동죄)

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⁹⁾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¹⁰⁾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처분¹¹⁾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정치관련 법률에서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¹²⁾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¹³⁾

전교조가 설립,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¹⁴⁾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¹⁵⁾는 것은 간접적이거나 교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9)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11) 각주 5)의 징계사유와 같다.

12)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2.29., 2013.12.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13)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소결

교육의 중립성은 교원의 중립성이 관철되지 않으면 보장되기 어렵다.

위에서 보았듯이 교원은 학문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의 영역에서 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 자유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의 이러한 규정은 교육이 정치로부터 병들지 않아야 자유민주주의가 지탱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규정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은 것은 노동운동을 병자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다른 법률을 형해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마치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수단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나, 연가투쟁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런 언론의 선동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¹⁶⁾¹⁷⁾

5. 전교조에 관대한 사법부

가. 전교조 소속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판결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고 법원에게는 일개 법전 속의 보너스 페이지 정도로 변한 것이 이미 오래된 일이라 새로울 것도 없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다는 것은 비단 현재의 위기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임에도 법원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사례1>

한 씨 등은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반포하고 자료집 내용을 강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1심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자료집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고 이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한 씨 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한 씨 등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을 삭제했고, 강의대상이 고등교육을 받은 교사들로 한정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씨와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대법원은 이를 확

16) 대법원은 준법투쟁이란 명목의 행위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었다면 단체행동권으로 보아야한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10473 판결). 연가투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산고등법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06.04.13. 선고 2005노680 판결).

17) 물론 법을 지키는 것이 곧 투쟁이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회가 얼마나 법률을 비현실적으로 제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

<사례2>

검찰이 전교조 안에서 이른바 새시대교육운동 모임을 꾸려 통일교육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전교조 교사를 기소한 사안에서 1심에서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 무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1심에 유죄로 인정되었던 문건의 일부에 대해 ‘민족 간부’나 ‘연방 통일국가’ 등의 단어가 사용됐다고 해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제기.

<사례3>

1999년 교사로 임용되어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전북 임실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김모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학부모 180여명과 함께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 전야제, 소위 ‘빨치산 추모전야제’에 참석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표현물을 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전야제 참석 사실은 맞지만, 김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2심에서도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에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은 “이 사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고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김씨의 행동을 반국가단체 활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김씨가 소지하거나 반포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라고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작성된 문건이거나 이를 필사한 문건이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하였다. 이 과정까지 재판기간만 3년이 넘게 걸렸다.

나. 정치적 중립성 위배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한 판결

<사례1>

검찰은 2010년 김 교사 등 7명이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시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사를 해임, 나머지 교사들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교사들은 징계가 과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시교육청은 징계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 이에 시교육청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7

월 25일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패소하였다.

<사례2>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아무개(54)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을 낸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8명)은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들 대법관은 “정치적 중립성 침해 행위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드러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례3>: 사례2와 비교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이던 서 씨는 2009년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았다. 서 교사는 그 해 7월, 정부를 비판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동료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주도해 부산시 교육감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서 교사는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서 교사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 교사의 해임에 대해 “(서 교사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아니었으며, 시국선언의 추진과정에서 수업결손 등 3자의 피해가 없었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에 대한 판단이 다양해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였다.

다. 소결

엄연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끊임없이 법원이 사문화시켜왔다는 필자의 주관적 시각을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이해할 부분도 있다.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교사가 저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법원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징계처분에 대한 타당성여부는 교육당국에게 1차적 판단권이 있기에 일응 교육당국의 전문적 견해를 존중해야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법체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

18) 물론 유독 형사법 중에서 국가보안법만 지독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도 의문이고 공공의 이익과 안보에 관련된 범죄는 위험범인데도 불구하고 침해범 혹은 결과범적으로 해석하는 이상한 법해석은 의문이다.

배하는 교사는 교단에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천명하고 있다.

법원은 전교조에 대해 매번 법은 위반했지만 교사직을 관둘 만큼은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왔다. 그것이 아무리 현란하고 기교적인 법논리라 하더라도 일반국민들에게겐 결국 전교조의 행위를 법원이 허용한다는 논리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6. 나오며,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기도 전에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성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의 방기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전교조의 행동은 그 행동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정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외피를 쓰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식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자란 학생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한지 오래다.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거짓된 팩트를 가지고 세상에 누가 적이고 누가 내 편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타도해야 하는가 하는 전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 교사라면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나타난 부조리와 불합리를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민주적 프로세스와 소양을 가르쳐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는 기성세대의 무한한 정치투쟁이라는 그 망국적 병을 학생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학습시켜 학생들의 가치관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미래를 살아야할 우리 자식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전교조 계기수업의 문제점

김 정 옥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1. 들어가는 말

계기수업이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신문기사, 사설, 칼럼 등의 다양한 부교재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차원에서 계기수업이 활용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07년경부터 전교조는 계기수업안을 본격적으로 기획 배포하기 시작했고 특히 총선과 대선의 주요 이슈였던 비정규직법, 반전평화, 한미FTA,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학생들을 의식화하는 도구로 계기수업이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7년부터 기획 배포된 159개의 전교조의 계기수업안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교조의 계기수업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교육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배포된 전교조 계기수업안 159개를 살펴보면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의 빈도수가 확연히 높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전교조의 이념 투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 전교조 계기수업 들여다보기

가. 계기수업안 배포현황 (전교조 홈페이지 자료)

년도	자료 수	조회수	평균 조회수	주요 이슈
2007	34	29,168	858	대선, 한미FTA,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노동절, 학생인권, 남북정상회담, 광우병
2008	9	10,635	1,182	총선, 6월 민주항쟁, 4.19혁명, 독도
2009	-	-	-	
2010	3	2,901	967	전태일40주기, 4.3평화수업
2011	4	5,560	1,390	5.18민중항쟁, 6.15선언
2012	26	23,235	894	4.3항쟁, 4.11총선, 4.19혁명, 5.1노동절,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6.15계기수업, 학생의날, 학생인권조례, 비정규직, 18대대선,
2013	29	100,074	3,451	4.3항쟁, 4.19혁명, 5.1노동절, 5.19민중항쟁, 6.10민주항쟁, 학생의날(전태일), 철도민영화,
2014	17	33,633	1,978	후쿠시마원전사고, 4.3항쟁, 3.15부정선거, 세월호애도, 5.1노동절, 5.18민중항쟁, 6.4지방선거, 학생의날
2015	27	48,788	1,807	3.11후쿠시마원전사고, 4.3항쟁평화수업, 4.19혁명, 5.1노동절,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6.15남북공동선언, 학생의날
2016	10	150	15	3.11후쿠시마원전사고, 4.3평화수업, 4.19혁명, 4.26체르노빌, 4.16세월호사건
(합계)	159	254,144	1,598	

* 별첨#1 목록 참조

나. 전교조 배포 계기수업안 주제별 빈도수

주제별	배포빈도수	주제별	배포빈도수
5.18 민중항쟁	23개	장애인/여성	13개
5.1 노동절/비정규직/ 철도민영화	17개	6.15남북공동선언/ 반전평화/남북통일	11개
대선/총선/선거관련	16개	3.15부정선거/4.19혁명	7개
후쿠시마원전사고/탈핵/ 환경/밀양송전탑/물의날	16개	6.10 민중항쟁	6개
학생의날/전태일/인권조례	15개	기타	21개
제주 4.3 항쟁/평화수업	13개	(합계)	(159개)

* 기타주제들 : 한미FTA, 국가보안법, 독도, 어린이날, 교과서국정화, 새만금, 광우병, 아이티지진, 4.13임시정부수립, 세계인의날, 세월호애도, 참교육, 다문화, 사회공공성, 대륙철도 등...

다. 전교조 계기수업이 편향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이유

- 1) 계기수업의 주제나 방향이 선거와 무관치 않은 활동이라는 점
 -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7년부터 2008년 3월 까지 41개의 계기수업안을 집중적으로 기획·배포함
 - 2008년 4월 이후 2011년까지 4년간 9개에 그쳤던 계기수업안 배포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한해에 27개나 만들어져 집중 배포됨
- 2) 계기수업의 주제/시기가 전교조의 사회정치적 운동방향과 일치하고, 나아가 시국선언이나 거리투쟁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 한미FTA, 국가보안법, 대선/총선 등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전교조는 뚜렷한 자신들의 입장을 시국선언이나 거리투쟁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기수업을 시도해 옴
 - 전교조는 좌파 노동운동의 극단에 서 있는 노조임을 주장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계기수업을 가장 역점적인 주제로 해마다 다루어 옴

라. 편향성 논란에 대한 참고자료

<2007년의 전교조 활동 사례>

정진화 위원장 취임과 함께 ‘아이들 속으로, 학부모 곁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워 변신을 시도한다면서, 3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교사선언’, 4월 자유무역협정 반대, 6월 한미FTA 무효화 투쟁, 8월 이랜드사태 연대투쟁 등의 정치적인 색채를 띤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침

한편 3월에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란 주제로, 5월에는 한미FTA를 주제로, 9월에는 노동권을 주제로 투쟁활동과 연관된 계기수업을 펼침

<2007. 3. 29 세계일보 사설 발췌>

사실 전교조는 그동안 비정규직,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 이라크 파병, 6·15 남북공동성명 등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계기수업을 실시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 그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사회 현안에 대한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계기수업을 친북·반미의 좌파 이념 교육장으로 활용해 왔다. 이밖에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북한 역사책 ‘현대 조선력사’를 베끼다시피 해 ‘통일학교 자료집’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교사는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까지 데려가기도 했다. 그 결과로 인터넷에 ‘우리는 미국의 속국’, ‘미국에 휘둘리는 남한은 북한에 부끄러워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좌파 청소년’까지 생겨난 것이 현실이다.

<2006. 4. 11 세계일보 사설 발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1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중·고교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주제로 ‘계기수업’을 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중략) 우선,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교육현장이 이용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아무리 전교조가 민주노총 산하라고 해도, 어떻게 수업을 ‘총파업 투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선택권이 없는 어린 제자를 ‘투쟁 도구’로 삼는 것은 교사의 직권 남용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비정규직 입법에 반대하는 전교조 입장을 감안하면 더욱 ‘해서는 안 될 수업’이다.

<2011. 5. 20 동아일보 사설 발췌_마르크스 혁명론 가르치는 ‘김상곤 교육’>

경기도교육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 계기교육’을 실시 (중략) 이 자료가 ‘읽기 자료’에는 마르크스 혁명론, 식민지 해방운동 등 좌파 이론과 운동을 소개한 글이 실려 있다. 5·18을 가르친다며 철지난 마르크스 혁명론을 어린 학생들에게 읽히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략) 이 자료에는 마르크스 혁명론과 관련해 ‘자유는 여전히 더 확장돼야 하며 계급 철폐라는 개념에까지 이르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유의 확장이 (혁명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는 글이 실려 있다.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식민지 해방운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수많은 사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글도 소개했다. 5·18민주화운동은 계급혁명이나 식민지 해방운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글들을 수업에 활용하게 되면 우리 사회를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보게 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학생들이 5·18 자체를 잘못 알게 될 가능성도 있다.

마. 전교조 계기수업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북한이 핵 개발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통일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될 것이기에
(북한 핵의 본질 즉 북의 실패한 체제 수호, 대남적화야욕을 가르치지 아니함)

교사도 노동자이다.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교사는 부당하다.
(하루 쉬는 것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먹히는 논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면 일본처럼 공산당도 허용하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
(조국근대화를 이룬 앞선 세대는 수구꼴통, 반통일세력, 수구 냉전세력으로 매도)

두발자유화, 0교시 수업 폐지는 학생 인권이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주장? 내편으로 만들어 거리로 나가게 하려는 우호전략임)

미국 놈들이 6.25때 얼마나 많은 양민을 학살했는지 아니?
(북한군의 양민학살은 언급하지 않음)

계기수업이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고 전교조가 원하는 답을 써야 좋은 평가를 얻음
(‘한미동맹 강화’, ‘국보법 폐지 절대불가’ 등의 답을 쓰면 좋은 점수 받기 어려워)

민노당 찍으면 대학도 병원도 공짜다.
(18세 투표권 주장 ---> 고3학생 투표 참여케 하는 것 ---> 전교조 영향력 강화)

미국과 유일하게 대적하고 미국말 안 듣는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 정말 대단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반미 감정 유발하고 잘못된 대북관 대미관 심어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군이 너희들 총 쏘 죽여도 깃소리 못한다.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전시작전권은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공유)

고영주 변호사 “전교조의 참교육은 ‘민중민주주의 교육’이다. 학생 대다수를 피지배 계급으로 보고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자본주의식 민주주의교육을 거부하고 민중민주주의(공산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2008년 언론인터뷰)
(겉으로는 평등교육=선천논리, 속으로는 철저한 계급주의=실천논리를 가진 교육)

* 통일부 장관상 공모 글짓기대회 심사 소감

3.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한 평가 - 계기수업 교재

가. 초등용 교과서의 주요 문제점_교육부 발췌 [별첨#2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1) 부정적 국가관 조장

- p2. 진실을 은폐하려는 불의한 정권
- pp. 68~73 세월호 사건 관련 국가 대통령 비하

2) 교육적 자료로서의 부적절성

- p.12~21 세월호 침몰 순간 심리적 공감 유인
- p.44 전문용어 난이도가 초등발달수준에 맞지 않음
- pp.76~77 특정단체(민중의 소리)의 자료만 일방적으로 제시
- p.79 단순한 감정표현에 불과한 반대의견을 자체만을 문제 삼아 게재함
(일부의견을 일반화한 오류)

3) 사실왜곡

- p.25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대법원 확정 '15. 11. 12)
- p42 4월 16일 7시경 정신을 잃었고
(8시 48분 기울어지기 시작_학생들 기상하기 전에 침몰 추정토록 유인)
- p59 정부가 후속법안 집요하게 방해하고 반대
(정부가 참여하여 특별법('14.11.19) 시행령('15.5.11) 제정)

나. 중등용 교과서의 주요 문제점_교육부 발췌 [별첨#2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1) 부정적 국가관 조장

- p2 진실을 은폐하려는 불의한 정권
- p90 대한민국은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국가
- p92 국회 입장시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유가족 시위장면 사진 ---> 세월호 사태
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는 취지로 사진 인용

2) 교육자료로서의 부적절성

- p26 비속어 등 수업교재로 활용하기 부적절한 문구를 적나라하게 게재함
- p29 침몰상황 심리적 공감 유인하여 정서적 불안감 및 충격 우려
- p96 대통령, 장관, 해경철장 등 누구도 주체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함 ---> 단원고 교
감은 책임을 느껴 자살함 ---> 자살(생명경시)이 책임지는 올바른 방법인가?
- p120~126 함께 하는 이웃 ---> 특정 단체나 기관을 체험학습장소로 홍보

3) 사실왜곡

p76 다이빙벨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

pp99~100 특별조사위원회 여당추천위원의 자진사퇴가 업무를 방해?

다. 기타 논의사항

1) 4.13 총선 시기에 맞추었다는 점

전교조는 2004년부터 총선/대선이 있는 해마다 끊임없이 계기수업을 강화했다. 세월호 사건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2015년에는 세월호 관련 계기수업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 총선을 앞두고 교과서까지 만들어 계기수업에 나선 것은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2) 대한민국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

우리의 선조들은 삶 속에서 죽음으로 인한 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화목했던 부부가 사별할 때 일부러 내외를 한다든지, 죽음에 임박한 부모가 자식에게 쌀쌀하게 대하여 정을 끊는다든지, 죽은 자의 물품을 태워 없앤다든지 하는 것들은 산 자에 대한 죽은 자의 아름다운 배려이고 죽음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다. 3년째 접어들어 잊혀져 가는 세월호 사건의 공포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수백만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다시 떠 올리려는 것은 대한민국 고유의 정서와 어긋난다.

416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가는 학생들의 공포와 억울함, 불안 등을 체험학습을 통해 되새기게 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대한 원망과 책임추궁 등 매우 부정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영혼들이 국가와 사회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가정은 온당치 않다. 죽은 자를 이용하여 전교조의 편향적 시각을 학생들에게 이입시키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무례다.

3) 초 중등생의 연령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점

TV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도 연령제한이 있다. 세월호 416교과서에 실린 체험 프로그램은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교육이수만으로도 새로운 트라우마를 갖게 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다.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을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셈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충격을 수반할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전문가의 검토도 없이 도입한다는 것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초·중등생에게 세월호에서 죽어가던 학생들의 심리적인 충격과 고통, 파탄직전의 불안감 등의 감정이입을 통해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염려된다.

단언하건대 세월호 416교과서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들의 평가를 받아본다면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킬만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의학적인 결론이 나오리라고

확신한다.

4. 교육부 보도자료에 대한 전교조의 반박에 대하여[별첨#3 전교조 보도자료 참조]

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입각한 교사의 수업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교조 반박문 3. 2)항에서는 헌법 31조를 거론하면서도 중립성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 자율성, 전문성, 수업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스스로 416교과서의 편향성을 인정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연령에 맞지 않는 체험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전문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나. 416교과서는 학생용 도서가 아니라 교사용 자료라고 강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전교조는 교사 전문집단임을 자처하면서 ‘교과서’라는 단어의 법률적이 정의나 언어적인 정의조차 모르는 것인지 한심하다. 발표된 교과서의 문제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뒤늦게 교사용 자료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한발 물러서는 전교조의 태도를 볼 때 스스로도 4.16교과서가 문제 투성이임을 시인한 셈이다.

다.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416교과서는 비록 편향된 내용이지만 정부는 다양한 의견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라는 말로 들린다. 전교조는 화려한 수사로 초점을 흐리지 말고 416교과서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어느 한편의 편향된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을 솔직히 인정하기 바란다.

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같이 마녀사냥을 하지 말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는 좌편향된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국정화라는 방법 외에는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416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는 그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지 계기수업이라는 수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편승하여 이번 416교과서의 문제점을 비켜가려는 논리는 틀린 것이다.

마. 교육부 협조공문에 대한 전교조의 비난에 대하여

계기수업에 대하여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 그 누구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

견을 교육현장에 말하는 것은 감독 및 장학권을 가진 교육주체의 고유 권한이다. 오히려 전교조라는 단체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가 계기수업에 대해 협조공문을 보낸 것에 대하여 전교조가 감놔라 배놔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계기수업에 대해 협조공문이 나가더라도 결국 그 최종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교육부가 학교 단위에서는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석자료를 만들어 학교장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바. 언론의 비판에 대한 전교조의 반박 주장에 대하여

전교조는 보수언론이 ‘책자 전체의 맥락과 의의를 파악하지 않고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집착하여 교묘하게 호도’ 한다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스스로 부분 부분마다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아예 인정한 셈이다. 전교조는 600만 초·중등학생을 가르치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교사 집단이다. 그렇다면 교과서 자구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응은 교과서 문제를 얼마나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라면 어느 한 부분의 문구 하나조차도 실수가 없어야 하고 교육적으로 완벽해야 하는 것이다.

5. 향후 과제

1) 학교장이 자율적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편향적인 계기수업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의 협조 공문이 없더라도 학교 내부 구성원들 스스로의 문제제기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바로 잡아지는 교육계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별첨#4 계기수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고시 내용]

2) 교육부나 교육청의 과도한 권한 행사 또는 전교조 등 교사집단의 외압에 의해 평소 학교장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풍토가 일상화되다보니, 학교장들이 잘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문제다.

3) 따라서 평소 학교장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은 권한이양에 앞장서야 하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이나 규칙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큰 도움이 된다. 학부모의 민원으로 제기되면 학교장들로서는 전교조의 계기수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명분을 가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별첨#1>

전교조 계기수업 목록

(전교조 홈페이지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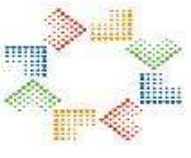
159	4.26 체르노빌 계기수업 - 우리 마을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면	2016.03.28	2
158	방사능재해 환경/인체영향 분석, 후쿠시마의 10가지 교훈	2016.03.29	0
157	4.20 장애인권공동 수업	2016.03.28	7
156	4.19 혁명 수업 자료	2016.03.25	10
155	4.3 평화수업 자료 탑재 및 활용 안내	2016.03.23	13
154	4.3 평화수업 자료(초등용 수업안 4차시)	2016.03.23	8
153	4.3 평화수업 자료(중등용 수업안)	2016.03.23	11
152	3.22물의 날 - 수업 혼화 자료 링크	2016.03.22	7
151	3.11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계기수업 자료	2016.02.29	42
150	3.8 세계 여성의 날 계기수업 자료	2016.02.29	50
149	[영상] 국정화관련 영상 모음1	2015.11.09	221
148	2015 학생의 날 공동수업 자료 및 동영상 올립니다.	2015.11.02	432
147	"610과 615, 함께하는 6월" 수업안 공유합니다.	2015.06.10	1709
146	6.13탈핵시민행동의 날 공동수업자료입니다~	2015.06.02	1882
145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 기념 계기수업자료	2015.06.02	1705
144	대륙철도 영상 추가합니다	2015.06.04	1557
143	인물로 본 6.10 민주항쟁 계기수업(이한열, 박종철 열사)	2015.06.02	1596
142	최규석 만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0 민주항쟁 생생하게 보기	2015.06.10	1504
141	사회공공성 강화 수업 자료입니다.	2015.04.30	1777
140	5.1 노동절 계기수업 자료입니다.	2015.04.30	1743
139	2015년 5.18 민주항쟁 계기 수업 자료 탑재	2015.04.20	1771
138	만화 '망월'로 풀어내는 5.18 민주항쟁 수업 자료 탑재	2015.04.28	1876
137	2015년 5.18 민주항쟁 계기수업	2015.04.23	1744
136	5.18 민주 항쟁 계기 수업 웹자료 탑재	2015.04.21	1645
135	2015년 5.18 민주화 운동 교육자료 목록	2015.04.20	1707
134	초 중등 5.18 민주항쟁 계기 수업 동영상 자료 탑재	2015.04.20	1828
133	4.26 체르노빌 원전사고 계기수업	2015.03.27	2543
132	후쿠시마의 10가지 교훈	2015.04.21	1429
131	4.19혁명기념일 수업자료	2015.03.27	2485
130	제주 4.3평화수업자료	2015.03.27	2565
129	제주 4.3평화수업 추가 영상 자료	2015.03.31	1634
128	제주 4.3평화수업자료 (중등용)	2015.03.31	1594
127	제주 4.3평화수업자료(초등용) PPT자료	2015.03.31	1575
126	4.20 장애인권공동수업 자료	2015.03.26	2421
125	다름과 어울림을 통한 온배움터 만들기	2015.03.26	2325
124	3.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년 수업자료	2015.02.27	2846
123	3.8여성의 날에 생각해보는 <어머니 노동> 수업자료	2015.02.26	2672

122	2014 학생의 날 계기수업 자료	2014.10.29	2569
121	선거와 민주주의 시리즈 3 - 6.4전국동시지방선거 계기수업자료	2014.05.23	3061
120	참교육25년, 학교 미래를 디자인하다(5월 교육주간 공동수업자료)	2014.05.08	3210
119	5.18 민중항쟁 계기수업자료입니다(5.18재단 교육자료 제공)	2014.04.29	2633
118	5.18 광주민중항쟁을 노래하다	2014.05.01	2595
117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 5.18 레드페스타	2014.05.01	1644
116	5.18민중항쟁 교육자료(생생하고 다양한 5.18국어수업)	2014.04.29	1483
115	5.18민중항쟁 교육자료(5.18과 노래)	2014.04.29	1365
114	세월호 참사 애도 공동수업 자료	2014.04.24	2436
113	5.1 노동절 계기수업 자료입니다~	2014.04.22	1611
112	선거와 민주주의 시리즈 2탄-선거와 민주주의 수업지도안	2014.04.10	1808
111	3.15부정선거와 4.19혁명기념일 계기수업자료	2014.04.08	1354
110	4.20 장애인권 공동 수업 자료	2014.03.27	1560
109	4.3계기수업 자료입니다	2014.03.27	1583
108	4.3계기수업 동영상자료입니다	2014.03.31	1432
10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년 탈핵 계기수업자료	2014.03.05	1675
106	제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계기수업 자료	2014.02.25	1614
105	[공동수업자료] 철도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수업	2013.12.13	3941
104	[공동수업자료 2] 2013 학생, 전태일	2013.11.03	4389
103	[공동수업자료 1] 2013 학생, 전태일	2013.11.01	4032
101	2013 학생의 날 공동수업 자료	2013.10.31	3885
100	[생태·에너지 공동수업]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2013.07.11	4252
99	인물로 보는 6.15 남북공동선언 계기수업자료 (문익환)	2013.06.10	4279
98	인물로 보는 6.10민주항쟁 계기수업자료	2013.06.10	4021
97	2013년 518재단 개발한 웹교육자료	2013.05.27	3815
96	5월엔 민주시민교육 현장체험을~ (장소 안내)	2013.05.02	3963
95	6.5 세계환경의날 자료(중/초등용)	2013.05.02	3955
94	환경의날 참고자료(에너지정책, 밀양송전탑문제)	2013.06.05	3648
93	5.20 세계인의 날 자료(중등용)	2013.05.02	3294
92	5.18 민중항쟁 자료(초등용)-5.18재단 영상자료 포함	2013.05.02	3467
91	5.5 어린이날 수업자료(초등용)	2013.05.02	3226
90	인권평화수업자료 전교조2095	2013.05.02	3593
89	2013노동인권교육 교실에 가다	2013.04.26	3163
88	메이데이 공동수업 자료집 (완성본, 각종 영상과 만나세요)	2013.04.26	3250
87	5.1 노동절 계기수업 의견남기기 (2)	2013.04.25	3209
86	5.1 노동절 계기교육 자료 수정(전북지부 참교육실장) (1)	2013.04.15	3159
85	5.1 노동절 계기수업 자료	2013.04.02	3309
84	4.20 장애인의 날 계기수업 자료	2013.04.02	3331
83	4.19혁명기념일 계기수업자료	2013.04.02	3538
82	4.13임시정부수립기념일 계기수업자료	2013.04.02	3069
81	4.3계기수업 자료입니다	2013.03.26	3612
80	4.3 추가영상입니다~	2013.03.26	3133

79	2013 3월8일 여성의 날 계기교육자료	2013.02.21	3656
78	여성의날 기념 실천 메세지(인증샷 용)	2013.03.07	2925
77	[일꾼연수 강연 자료]탈핵은 해야하며 가능하다 (1)	2013.01.28	2956
76	제18대 대선 - 정당별 정책비교 중고생 활동자료	2012.11.26	3216
75	18대 대선 - 시민이 주인되는 선거이야기(교육자료)	2012.11.26	975
74	18대 대통령선거 - 투표참여 계기교육	2012.11.26	939
73	비정규직 계기수업 자료	2012.11.13	771
72	학생의날 맞이 "학생용 학교폭력예방 영상"	2012.10.31	867
71	학생인권조례 교육용 영상	2012.10.31	730
70	학생의 날 참고영상 - 학교탐구생활	2012.10.31	667
69	학생의 날에 아이들과 볼 영상- 웰컴투 벤포스타	2012.10.31	663
68	2012년 학생의날 기념 - 학생인권, 권리	2012.10.31	682
67	학생의날 행사자료(현수막)	2012.10.25	574
66	학생의 날 기념 교육자료	2012.10.25	679
65	615 계기수업 자료	2012.06.14	1494
64	6.10 민주유적 현장 탐방 안내	2012.06.07	686
63	6월 민주항쟁 계기수업자료	2012.06.07	760
62	518 영상(518 재단 제작)	2012.05.18	848
61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계기교육자료	2012.05.15	1024
60	2012 5.1절 계기교육수업안 PPT	2012.04.25	1093
59	5.1절 세계 노동자의 날 계기 교육자료(2012년 제작)	2012.04.25	770
58	4.20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계기교육(초등용)	2012.04.18	699
57	제52주년 419혁명 계기교육	2012.04.18	719
56	<계기수업> 4.11 총선 계기교육 자료	2012.04.09	789
55	4.11 총선 계기자료	2012.04.09	647
54	<계기수업> 4.3항쟁과 평화수업	2012.03.23	754
53	104주기 세계3.8여성대회 전국행사 안내 (포스터)	2012.02.29	727
52	38 세계 여성의날 기념 지회(분회)실천 사례	2012.02.29	657
51	104주기 38 세계 여성의날 계기교육자료/ 영상자료	2012.02.29	805
50	환경교육 수업 자료	2011.06.09	2040
49	2011년 615 공동수업자료	2011.06.09	1507
48	518 계기수업 자료(경기도교육청)	2011.05.19	1109
47	장애인권 계기수업 자료	2011.04.26	904
46	전태일 40주기 공동수업자료	2010.10.06	1048
45	4.3평화수업 자료	2010.03.30	989
44	아이티 지진 대참사 계기수업 자료	2010.02.01	864
43	전교조 비릇 한중일 교원조합 20일부터 평화교재실천교류회	2008.10.02	2186
42	2008년 제3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9월 20-21일) 참석	2008.09.30	1962
41	3월 22일 물의 날 수업 자료(물은 생명이랍니다)	2008.03.12	1101
40	[계기수업] 2008년 4.9 국회의원 선거 교육 지도안	2008.03.09	1178
39	서해안기름유출사고 공동수업 지도안(2007.12.18. 올림)	2008.03.09	771
38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마을 만들기' 공동수업(충북지부)	2007.10.24	851

37	계기수업_남북통일, 평화 관련	2007.10.01	975
36	2007 남북정상 선언 바로알기 계기수업	2007.11.10	823
35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계기 수업	2007.10.06	817
34	2004계기수업_미-이라크전 반전평화(전교조)	2007.10.01	806
33	2007계기수업_615공동수업	2007.10.01	825
32	계기수업_새만금 관련(초, 중등)	2007.09.13	802
31	계기수업_노동 관련	2007.09.13	770
30	2006노동수업안(도덕과), 메이데이 수업자료, 노동권 수업지도안	2007.10.01	792
29	2007계기수업_노동절 공동수업	2007.10.01	917
28	2007계기수업_모든국민의노동권확보를위한공동수업(비정규법)	2007.10.01	793
27	2001계기수업_노동절수업	2007.09.13	752
26	2001계기수업_교과서왜곡	2007.09.13	796
25	2007계기수업_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탐구 수업 지도안	2007.06.15	1018
24	2006계기수업_학생인권법안(중등, 서울지부)	2007.10.01	747
23	『6월 민주 항쟁』계기 수업 안내	2007.06.05	995
22	『6월 민주항쟁 21주년』계기 수업 안내(2008)	2008.05.31	762
21	『5.18 민주 항쟁』계기 수업 안내	2007.05.07	1009
20	『5.18 민주 항쟁』계기 수업 안내(2008)	2008.05.14	816
19	2002계기수업_5.18수업	2007.09.13	741
18	2001계기수업_5.18수업	2007.09.13	705
17	2007 어린이주간 공동수업 자료집	2007.05.07	897
16	2007계기수업_한미 FTA에 대한 이해	2007.05.07	888
15	4·19 혁명 동영상 안내 (MBC제작 20분으로 편집)	2007.04.13	1003
14	4·19 수업 자료 안내(2008)	2008.04.15	941
13	2004계기수업_악법(국가보안법, 노동법, 사립학교법)	2007.03.28	847
12	2004계기수업_정보인권	2007.03.28	819
11	2006계기수업_독도(초등, 중등, 사회과)	2007.03.28	951
10	2008년 독도 계기 수업 안내	2008.08.26	916
9	2006계기수업_노동(도덕과), 노동권 수업지도안, 메이데이	2007.03.28	955
8	2004계기수업_총선(전교조)	2007.03.28	905
7	2007계기수업_대통령선거	2007.11.10	725
6	2006계기수업_지방선거(사회과)	2007.03.28	966
5	2004선거관련 자료	2007.03.28	807
4	2004계기수업_총선(초등)	2007.03.28	839
3	2004계기수업_총선(손진근)	2007.03.28	967
2	2004계기수업_총선(천희완)	2007.03.28	834
1	2004브라질 총선 동영상	2007.03.28	831

<별첨#2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담당부서	교육과정운영과
배포일시	2016. 3. 25.(금)	담당과장	강성철 (044-203-6729)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연구관 곽윤철(044-203-6292)

**소위 전교조의 ‘416교과서’ 교육자료로 부적절
- 시도교육청에 검토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요청 -**

- 교육부는 2016.3.25.(금) 소위 전교조가 교육용으로 발간한 ‘416교과서’에 대하여 국가관, 교육적 적합성, 사실 왜곡 등을 중점사항으로 관련부처, 교육전문기관, 학교 현장 교사, 부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검토 결과 소위 전교조의 ‘416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 이 자료는 국가 기관(정부, 국회, 경찰 등)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으며,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주장 및 특정 언론·단체 관련 자료의 제시가 과다하고,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교육부는 소위 전교조의 ‘416교과서’를 활용하여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어서는 안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전교조 계기수업용 ‘416 교과서’ 검토 결과
2. 교육의 중립성 및 계기교육 관련 법령 및 규정

전교조 계기수업용 '416 교과서' 주요 검토 결과

□ 초등용 주요 검토결과

분류	관련 내용	검토의견
부정적 국가관 조장	p.2 진실을 은폐하려는 불의한 정권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유린하고, ~ 중략~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탄 압과 폭력만을 일삼은 이 정권은 416 참사의 진상규명마저 폭력적으로 방 해하고 국민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편향된 시각 및 의견 제시 로 학생들에게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을 조장할 수 있음
	pp.68~73 세월호사고에 대한 대통령 비하 글 등 -“여왕의 얼굴은 점점 비틀렸고~ 입에서 무언가 기어나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수없이 많은 시커먼 구더기들이 줄지어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름답던 여왕의 얼굴에서 천천히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들어가기’에 동화를 제시하고, 이 어서 ‘읽고 생각하기’에 ‘2014년 5월 10일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을 서술 함. 이는 동화 속의 여왕을 통해 대통령이 연상되도록 유도함 으 로써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부 정적 이미지 를 조장함
교육자료 로서의 부적절성	p.21 내가 세월호에 있었다면 배가 침몰하는 순간 어떤 것들이 생각날까요? 꼭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일을 떠올려 봅시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고 가 정하고 수업을 진행 하는 상황은 초등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불안감 을 유발 할 수 있는 등 학생의 발 달 수준 및 정서적 측면에서 부 적절함
	p.44 금변침, 과적, 복원성, 조타실 등 전문용어에 대한 의미를 선 긋기 문제 풀이로 제시하고 있음.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 은 어려운 낱말 의 뜻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습하도록 되어 있음
	pp.76~77 민중의 소리 사진들 -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 사진 - 2014년 7월 2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행진 사진 등	균형적이고 다양한 의견이나 자 료를 제시하지 않고, 특정 단체 의 자료를 편향적으로 게재함
	p.79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하기도 했습니다.(공직자, 교수, 종교인, 기업인 언급 부분)	일부 개인의 의견을 관계자 전 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는 오류 의 소지가 있음

사실 왜곡	p25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대요.	세월호 이준석 선장(무기징역)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15.11.12.)과 불일 치
	p.42 4월16일 나는 충격을 받아 7시경 정신을 잃었고...	정부발표 보고서(중앙해양안전심판 원, '14.12) 내용과 불일치(4월 16일 08시 48분 경 처음으로 배가 심하게 기울어짐)
	p.59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벌을 주려 했으나,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와 사건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는 오히려 집요하게 방해하고 반대했습니다.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 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4.11.19)과 시행령('15.5.11)은 국 회와 정부가 참여하여 제정되었음
종합 의견	○ 국가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 중심으로 서술되어 가 치판단이 미성숙한 초등학생의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 이 있음 ○ 초등학생용 교재로 사용하기에 용어 및 내용의 수준 등이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과장, 왜곡된 서 술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자료로서 부적절함	

□ 중등용 주요검토결과

분류	관련 내용	검토의견
부정적 국가관 조장	p.90 함께 생각해 봅시다 2.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참사는 ~ (생략)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세월호 참사’에는 ~ (생략) ~	우리사회가 마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라는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p.92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을 외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문구와 사진	사진에 포착된 장면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황을 왜곡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에게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의도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 자료 로서의 부적절성	p.26 하단 동영상 대화 내용 중 학생6 “...우린 뒤지기 싫다고!” p.28 학생59 “아~씨! 나 개 무섭습니다.” 학생88 “살 건데 뭘 개소리야.”	참사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제시하였다고 하나, 여과 없는 표현은 수업교재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함
	p.29 4. 마지막 ‘학생 90’ 칸에 만약 내가 세월호 안에 있었다면.... 5. 위 대화를 한 사람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침몰 당시 학생들의 상황을 여과 없이 전하며, 침몰해 가는 배 안에 있는 상황을 상상하고, 대화를 읽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정서적 불안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교육 자료로서 부적절함
	p.96 활동하기 1. 세월호 참사가 ~ (생략) ~ 국가기관의 중요한 정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단원고 교감선생님은 인솔자로서 책임을 느껴 자살했습니다.	단원고 교감선생님은 책임을 지고 자살했다고 제시하여 학생들이 차후 사건의 책임을 느낄 시 자살을 해야 한다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소지가 있음
	pp.120~126 함께 하는 이웃 (416 이후 아픔을 함께 하는 공간과 단체 소개 내용)	학생들이 참고로 알면 되는 내용 수준이 아닌, 특정 기관 또는 시민단체를 홍보하는 내용이 주(主) 이므로, 수업 교재로서 부적절함
사실 왜곡	p.76 조류를 이겨낼 수 있는 구조장비인 다이빙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당국은 다이빙벨과 같은 구조 장비를 투입한 적이 없다 함	해군에서 다이빙벨보다 더 성능 좋은 장비(포화잠수벨)가 있지만 얕은 수심, 센 조류엔 위험해 투입하지 못한 것이라 밝혔는데(‘14.4.29), 의도적으로 구조 장비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왜곡함
	p.99~100 특별조사위원회내의 여당 추천 위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함	여당 추천 위원들의 자진 사퇴한 것은 개인적인 일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종합 의견	○ 정부 발표 자료 등 객관적 사실 위주보다는 의혹·주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학생의 가치관·국가관의 혼란 소지 ○ 비교육적 내용이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교육자료로서 부적절함	

[참고자료 2]

교육의 중립성 및 계기교육 관련 법령

[교육의 중립성 관련 법령]

☐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교육의 중립성)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교원)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계기교육 관련 법령]

☐ 2009 개정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22)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해설서) 변화하는 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계기교육이 필요하다. 계기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자료에 대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또한, 계기교육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야 한다.

<별첨#3 전교보의 교육부에 대한 반박문>

[논평]

전교조의 '416 교과서' 관련

교육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에 대한 반박과 입장

- 참사에서 아무 교훈 얻지 못한 정부, 학생과 교사에게 또다시 '침묵' 강요 -
- 정부 견해와 다르면 괴담? 독선과 오만 버려야 -
- '416 교과서'는 교사용 책자로, 토론수업을 위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 제시 -
-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는 날 '416 교과서'도 완성될 것 -
-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416 토론수업의 전국적 실천을 선포할 것 -

1. 전교조는 오늘 '416교과서' 관련 교육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교육부는 3월 25일 '즉시보도자료'를 다급히 내어, 지난 3월 22일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정한 전교조의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고 각급 학교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참사 2주기가 되도록 진상 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다운 태도다. 또한 일부 보수·극우 언론과 매체는 자료 전체를 조망하여 그 의의를 평가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부각하면서 왜곡, 허위 보도로 전교조 매도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덕분에 우리는 뜻하지 않은 '416교과서' 홍보 효과를 누렸지만 감사를 표할 생각은 없다.

2. 전교조는 본 논평에 부가하여 교육부의 416 교과서 주요 검토 결과에 대한 반박자료와 법률전문가의 검토의견 및 반론을 첨부한다. 교육부가 보도자료에 '416교과서에 대한 주요검토 결과'라는 문건을 첨부하여 '416교과서'의 내용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폄훼한 데 따른 조치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일부 보완 방향도 담았다.

☞ 붙임 1. 교육부의 416 교과서 주요 검토 결과에 대한 반박자료 (초등, 중등) : 별첨 파일 참조

☞ 붙임 2. 교육부 보도자료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검토의견과 반론 : 별첨 파일 참조

3. '416교과서' 관련, 교육부의 조치 및 일부 보수·극우 매체의 허위 보도 및 비방에 대하여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교육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를 교육현장에 대한 침묵의 강요로 규정한다.

- 세월호 참사 이후 2년간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는 참사 당시 침묵을 강요하고 주체적 판단을 짓누르는 교육과 사회 풍토에 대해 일대 각성이 일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뜨거운 사회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교실은 곧 민주주의 학습장이다.

2) 교육부 조치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수업권을 침해한다.

- 교사는 교육과 교재 작성 및 선택의 자유, 교수 방법과 내용을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를 갖고 있다. '416교과서'를 참고한 교육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중 대처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그 자체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서 파생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

유, 즉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수업은 물론이요, 조회, 종례, 자치 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생과 교사가 대면하는 모든 장에서 실천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교육당국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일일이 신고하거나 허가 요청할 사항이 아니다.

3) '416교과서'는 학생용 도서가 아니라 교사용 자료이며,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 제시로 토론 수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규명되는 날 '416교과서'도 완성될 것이다.

- 3월 22일 '416교과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헌정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 책자는 교사용 참고 자료이다. 세월호 2주기를 맞아 뜻 깊은 교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이 참고할만한 자료로 보급된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 전체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될 것이라는 일각의 오해는 자신들의 보수적인 교육관념에 따른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전교조는 토론을 통한 주체적 판단을 매우 중시한다. 이 책에 담겨있듯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와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바람대로 세월호의 진실이 온전히 규명되는 날, 우리의 '416교과서'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4) 정부는 세월호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 외에는 불인정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 민주사회에서는 정부 견해도 사회의 다양한 견해 중 하나일 뿐이다. 정부 견해와 다르면 유언비어나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버리라는 민주시민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입막음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

5)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당시의 마녀사냥놀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교육부는 '416교과서'에 대한 총평에서 “국가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 중심으로 서술”,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 “정부 발표 자료 등 객관적 사실 위주보다는 의혹·주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학생의 가치관·국가관의 혼란 소지”, “비교육적 내용이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교육자료로서 부적절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당시 정부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들에 대해 마녀사냥식 낙인찍기를 할 때 동원한 표현들과 일맥상통한다.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루지 말라는 주문이다. ‘비교육적 내용이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운운한 부분은 ‘위안부’ 문제 초등교과서 삭제에 대해 이용한 명분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에게는 ‘위안부’ 등 잔혹한 압제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라고 요구하면서 자국에서는 침묵을 요구하는 모순된 태도를 가리기 위해 짐짓 교육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핑계는 군부 독재의 반인륜적 행태를 교육 내용에서 삭제하는 데에도 동원될 것이다. 요컨대,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와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가르쳐야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극복할 방향도 바로 잡히는 법이다.

6) 교육부의 이중 잣대가 참으로 노골적이다.

- 교육부는 이번 공문에서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2014년에는 교육부가 천안함 계기교육 자료를 내려보내면서 학교운영위원회, 교과협의회, 학교장 승인을 거쳐 실시하라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지침조차 스스로 여겼다. 더군다나 당시 교재로 제시한 '하나 됨을 위한 나라지킴이'는 2011년 발간 당시 북한을 제일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우리 군사력을 키워 같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 있는 서술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교육부는 '일부 극단적 표현이 있지만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은 없다'고 했었다. 교육부는 2006년에도 '노동절 공동수업'과 '한미 FTA 계기수업'에 대해 활용 자체 요구 공문을, '독도 계기수업'에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었다. 이도 부당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아예 일방적으로 '금지'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에는 철도 민영화(사유화) 관련 수업을 사실상 금지했고, 2014년은 천안함 수업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더니, 세월호 교육에는 침묵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계기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이중잣대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관 정립을 위한 정체성 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교육과 현수막 게시가 현장에 강요되고 있다. 학교 내 협의나 교사들의 판단이 고려될 여지는 없다.

- 이중잣대 적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교사 의견 표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2015년 두 차례의 국정화 강행 반대 교사 선언을 고발, 탄압하면서, 국정화 찬성 교원 선언에 대해서는 '봐주고' 있다. 더군다나 똑같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다른 단체의 선언에 대해서도 건전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전교조를 일찍이 '해충'에 비유한 대통령과 인식이 같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 질의에 회신한 지난 2월 5일자 교육부 공문에는 국정화에 반대하면 문제이고 찬성하면 건전하다는, 편향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7) '416교과서'가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졌다는 일각의 주장은 세월호가 2년 후 있을 총선 시기에 때맞추어 침몰했다고 억지 부리는 셈이다.

- 전교조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 단원고 교실 존치 등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줄기차게 연대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추구하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수립 과제를 더욱 힘차게 전개한다는 결의를 했으며, 총선에 즈음하여 우리의 교육 의제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 역시 진보적인 교육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는 교육단체로서 당연한 활동이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416 교과서'는 결이 다른 활동이다. 참사 2주기를 맞아 최대 피해자였던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에 대해 토론함은 지극히 교육적이며 인간적인 활동이다. 일각이 예단하듯 특정 정치 세력에 반대할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416 2주기 교육활동은 총선이 없더라도 이 시기에 교육자의 양심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니, 부디 합리적 이성으로 '416교과서' 보기 바란다.

8) 일부 보수·극우 언론과 매체는 허위 보도 및 비방을 중단하기 바란다.

- '416교과서'에 대한 일부 보수·극우 언론과 매체의 허위 보도 및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책자의 전체를 충분히 검토하고 맥락과 의의를 파악해 보도하지 아니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3월 25일 전교조의 대외비 문서인 대의원대회 자료를 인용해 '416교과서'가 교육용이 아니라 총선, 대선 이슈화를 위해 만든 것처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 자료집 인용 부분은 세월호 문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대응, 총선 시기 교육의제 부각 등 서로 다른 맥락에서 네 쪽에 편재된 문구를 임의로 연결한 것이며, 다른 문장에 속한 문구를 짜깁기 해 한 문장으로 엮은 부분조차 있다. 해당 기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별도 대응을 준비 중이다.

4. 위와 같이 볼 때 교육부의 416 교과서 관련 조치는 부당하므로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5.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 조치에 응하지 말고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전개될 다양한 교육할

동과 공동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의미 있는 행사들이 시도
교육청 자체로 기획,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6. 전교조는 교육부의 금지 조치가 철회되지 않더라도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학교에서 다양
한 교육활동을 실천할 것임을 밝힌다. 4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416 토론수업의 전국적 실천을 선
포할 계획이다.

우리 교사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416 참사의 최대 희
생자가 학생들과 교사들이었으며 희생자들 중에 전교조 조합원들도 있다. 세월호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것, 돈 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 것,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의 발달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들 것을 우리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죽음
앞에서 엄숙히 선언했다.

‘416교과서’는 참사 2주기를 맞아 기억과 진실을 향해 교육자들이 내어 놓은 양심의 흔적이
다. 벌이 된 아이들에게 바친 책을 함부로 모독하지 말라.

<별첨#4>

서울특별시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15-5호(2015. 2. 28)]

계기수업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

<초등>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가) 관련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나) 계기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다) 학교장은 계기 교육에 대한 검토 의견 기록을 보존하고, 교사는 승인된 계기 교육에 대하여만 수업을 실시한다.

<중등>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단위 학교에서 주제별, 상황별로 적절한 실시 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시방향을 사전에 설정한다.
- 다) 학년 및 교과 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 과정안 및 수업자료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고등>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단위학교에서 주제별, 상황별로 적절한 실시 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시방향을 사전에 설정한다.
- 다) 학년 및 교과 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 과정안 및 수업자료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토론 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하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EBS 이사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한다!

[illegible]

교육부가 전교조 '세월호 수업' 금지한 까닭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의 덕(德)을 가르쳐야 한다-

김 소 미

용화여고 교사/자유교육포럼 운영위원

교원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함께 민주 시민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덕성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학교는 사회의 예비 장소이며 학생들은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훈련되고 교육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사회에서 행동해야 할 민주 시민의 교양과 덕을 학교에서 배우고 교사는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의 '4·16교과서'의 세월호 관련 계기수업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3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왜 교육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국가적으로 슬픔을 감출 수 없는 충격적 재난이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비극 뒤에 어떤 정치적 공작이나 부정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계기수업을 하려 했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도 있다. 교육기본법 제 14조 4항이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교조가 하려는 세월호 계기 수업은 특정한 정파의 입장에서 국가기관(정부, 국회, 경찰)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계기수업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교과서’도 문제가 많다. 대통령을 괴물로 묘사하는(이 부분은 삽화를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은 여전하다) 등 편향되고 왜곡된 사례들이 다수 실려 있다. 국가기관을 공격하는데 사용한 사진자료는 ‘민중의 소리’ 같은 좌파성향의 단체가 제공한 것들이다. 학생들에게 ‘내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라는 식의 질문은 매우 비교육적이다. 학생들의 정서발달 측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적절한 내용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증오감을 심기 십상이고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조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계기수업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자기 자식에게 어릴 때부터 정치성이 짙은 편향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찬성을 할 까도 의문이다. 세월호 계기수업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전교조, 학생 볼모로 한 세월호 정치투쟁 중단하라’라고 썼다. 그러면서 올해 27세가 되는 전교조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념투쟁으로 인한 전교조 회원이 반토막 나고, 법외노조로까지 전락한 것과 관련해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다. 바른 말이다. 이제라도 전교조는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번 계기수업 금지 조치에 대해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계기 수업 강행의지와 함께 “법적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의 전교조의 행태를 볼 때 전혀 새로운 반응도 아니다. 전교조의 이런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하무인식 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대표적인 것이 법외노조 판결이다. 일반인도 대법원에 의해 법외노조로 결정되었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합법 노조였을 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법외노조가 되었을 때는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면서 반환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명단공개로 이행강제금을 물어 월급을 차압당하는 조전혁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칭송하더니 자신들의 국고보조금 반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전교조의 이런 이중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에 대해 교육부가 3월 29일 시중은행 12곳에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내 합법노조시에 지원받았던 전교조의 국고보조금 6억원에 가산금 197만원 정도를 더한 금액을 압류하였다. 지난 1월 2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으면 부동산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교사들로 구성된 전교조의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전교조라는 단체의 힘을 믿고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평소에 입만 열면 국

민을 외치던 그들이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다.

전교조는 또한 법외노조로 판결된 이후 노조전임자 35명을 학교로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휴직상태인데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자동으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권 면직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로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라면 이미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교육단체라고 말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들 미복귀자 35명 전원을 법에 따라 직권면직 하겠다고 하였다. 당연한 결정이다. 전교조는 하루빨리 전임자들을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전교조라는 집단의 힘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당장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학생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고 하자 별떼처럼 일어나 ' 획일화된 사고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였다. 그들은 역사교과서는 객관성과 다양성이 필수라고 하면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작년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이 되지 못하게 극렬한 반대를 한 것은 어떻게 해명할까?

전교조와 좌파 시민단체들이 몰려가서 협박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 결국 단 한 학교도 채택하지 못했다. 이러한 행동이 역사교과서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인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폭력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불러들인 이유였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

교학사 교과서도 다양한 관점의 역사라는 점에서 보면 학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했다. 그래야 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집단이기주의에 기댄 허황된 주장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전교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교과서 외에 전교조 역사교사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대안교과서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는 책은 표지에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는 사진을 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복 사진을 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쿠데타 정치적 인식을 심어주면서 독재자로만 폄하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역사인식이 그대

로 서술된 참고서이다. 이 책을 역사교사들이 읽고 역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역사인식의 중복 좌편향 교육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되어서 학교에 배부되었다고 해도 역사교사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한다면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것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인데 전교조라는 우산 아래 집단적인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개인이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전체 교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좌편향 체제 부정 교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쉽게 흘려듣거나 무관심하게 넘어갈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일이라면 생각 없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맑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정치적 이념과 사상적으로 편향된 가치관을 심는 교육이 횡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자명하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막아야 한다.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교육을 하지 않는 것,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편파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은 교사이자 참교육자로 지켜야 할 기본이다.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다.

[토론 ③]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하다

이재수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사무처장

[illegible]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한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MEMO>

[illegible]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